

제 8 장 주민생활 지원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4절.. 의료급여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으로 區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부터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민 중심의 복지구현을 위한 비전제시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구민의 복지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 우리구 특성에 맞는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 마련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가. 추진사항

- 용역시행(2010. 2. 9. ~ 2010. 6. 8.)
 - ▷ 사업비 : 26,000천원
 - ▷ 계약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복지학과 이기영 교수)
 -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복지 욕구·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및 주민욕구 조사 : 2010. 2. 9. ~ 2010. 4. 2.
-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 2010. 4. 6. ~ 2010. 4. 9.
- 자원 조사(사회복지시설) : 2010. 4. 9. ~ 2010. 4.15.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2010. 6. 4.
- 지역의견 수렴(공고) : 2010. 6. 5 ~ 6. 24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확정 : 2010. 6. 28.

나.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부 문 별	구분	사 업 명	비 고
저소득층 복지 및 자 활	일반사업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저소득층 고용안정 지원	
		용자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주거안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실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자활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육성	
		저소득층 지원관련 전문 상담봉사원 운영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핵심사업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 사업 추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노인복지	일반사업	독거노인 24시간 안전네트워크 체계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제공 시설 확충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긴급지원 및 무료급식 확대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	
		준고령자를 위한 노후 생활 설계프로그램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핵심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	일반사업	장애인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활성화	
		장애인 이용 문화·체육시설 확보	
		중증 장애인 대상 욕구 및 실태조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부 문 별	구분	사 업 명	비 고
장애인복지	일반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상담실	
	핵심사업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추가 설치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복지	일반사업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동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	
		아동발달 계좌 지원 및 홍보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복지장학기금 확충	
	핵심사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증가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교육 및 신고 체계 구축	
여성·보육 복지	일반사업	보육시설 영아보육도우미 배치 운영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보육료 지원 강화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증가	
		시설환경 우수보육시설 선정	
	핵심사업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	
보건의료 복지 연계	일반사업	관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확대	
		보건소 방문간호 연계 건수 확대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사업 발굴	
		노인보건사업 활성화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아동 및 청소년 사업관련 정신보건 센터 활성화	
	핵심사업	보건복지 네트워크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기반 조성	일반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증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자 고용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핵심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개요

가. 의의 및 특성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나. 도입배경

-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 ▷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구매
- 서비스 이용료 일부 본인부담으로 수요자 권리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차이 >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지 원 방 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
사 업 방 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Top-down)	지방 기획/중앙 지원·평가 분권식·상향식(Bottom-up)

다. 사업 유형

-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지역개발형 사업
 -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

구 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2. 2010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현황(총 14개 사업)

○ 지역선택형사업 1개 / 시개발형사업 12개 / 구개발형사업 1개

나. 총예산액(682,615천원) ▷ 국비 477,829천원 시비 196,857천원 구비 7,929천원

○ 지역선택형 207,143천원 / 시개발형 422,614천원 / 구개발형 52,858천원

다.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 사업명 :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 주요내용 : 취학전 아동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 수행기관 :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교원 등 10기관

○ 시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① 1·3세대 통합교육 「세대공감 Old & New」

- 주요내용 : 자연체험, 공예체험, 서예, 한문교육, 인성교육
▷ 노인이 가르치고 아동이 학습·체험
- 수행기관 : 금정시니어클럽 등 6개 기관

②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주요내용 : 부산 해양도시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
해양도시 탐험, 해양역사 탐험, 1박2일 체험캠프
- 수행기관 :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4개 기관

③ 근로자들의 근로의욕향상과 가족문제 예방 서비스

- 주요내용 : 제조업체근로자의 여가, 체력증진, 문화체험 활동
- 수행기관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

④ 선원가족 위기개입서비스

- 주요내용 : 선원가족의 부부관계 증진, 가족캠프 등
- 수행기관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

⑤ 급성기 심혈관 질환후 집중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심혈관 중재시술 및 심혈관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에게
검사 및 방문 관리
- 수행기관 : 동아대병원 임상시험센터

⑥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 주요내용 : 특수 휠체어 렌탈, 맞춤형 포지셔너 등 재활기구 대여
- 수행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지부 등 2개 기관

⑦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수행기관 : 부산대 산학협력단 등 10개 기관

⑧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주요내용 :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 성장지원 프로그램
- 수행기관 : 동래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

⑨ Art Therapy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

- 주요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미술치료활동에 따른
학교적응력 향상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동서대학교

⑩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주요내용 : 성장기 아동들에게 기악레슨 및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수행기관 :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⑪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 사업

- 주요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1:1 교과지도 및 일상생활지도 서비스
- 수행기관 : 사직종합복지관 청년사업단

⑫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 주요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뇌기능 증진 및 건강정서증진 서비스
- 수행기관 : 부산여자대학지역사회서비스센터

○ 區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사 업 명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주요내용 : 놀이·미술·언어·요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특수치료교육 연구원, 선아의 집,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라. 이용 및 지원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12,412건

▷ 지역선택형 8,988건 / 시개발형 3,100건 / 구개발형 324건

○ 지원실적 : 648,044천원 (국비 453,630천원 시비 187,933천원 구비 6,481천원)

▷ 지역선택형 196,925천원/ 시개발형 407,915천원/ 구개발형 43,204천원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단위: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1,400	693	248	459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바.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2,883,886	
구	생계·주거급여	4,623가구	16,618,549 수급자
	주거급여	4,390가구	4,231,415 수급자
	교육급여	1,051명	1,006,263 수급자 중·고 입학금, 수업료
	해산·장제급여	235명	107,421 수급자
분	정부양곡	1,833세대	527,902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744세대	40,150 수급자, 차상위
	교육장려금	1,232명	352,186 수급자, 차상위 자녀

사.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4,997	8,281	4,887	8,047	110	234
서 1 동	451	742	445	730	6	12
서 2 동	332	545	320	511	12	34
서 3 동	402	655	393	634	9	21
금 사 동	345	573	336	552	9	21
부곡1동	538	911	533	901	5	10
부곡2동	241	394	237	387	4	7
부곡3동	252	414	249	409	3	5
부곡4동	350	553	343	539	7	14
장전1동	194	325	187	308	7	17
장전2동	155	207	153	204	2	3
장전3동	274	425	270	419	4	6
선두구동	118	157	112	140	6	17
청룡노포동	152	237	152	237		
남 산 동	704	1,283	684	1,248	20	35
구서1동	193	366	185	344	8	22
구서2동	266	457	258	447	8	10
금 성 동	30	37	30	37		

아.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 급 권 자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 의무자	재산종류 구분 없이 4.17%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월/만원)	50	85	111	136	161	186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물급여 지급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 년1회 115.7천원) 단, 2004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없고, 부교재비는 34.9천원 지급 ❖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자녀 전원 (1인당 48천원, 학기당 24천원씩 2회)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500천원(쌍둥이 5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500천원
의료급여	❖ 전수급자 의료급여1종 ☞ 전액, 의료급여2종 ☞ 85% ~ 90% 지원

〈 예 산 현 황 〉

(단위 : 천원)

계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비등)	자 활 지 원			
		계	자활근로 사업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실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28,229,452	23,032,182	2,598,635	2,219,700	5,670	373,265

2.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가.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 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

나. 2010년 자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명)					예산 (천원)
				소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계				365	276	51		38	2,855,296
시· 군· 구 주 관	자 활 공 동 체	소계(5개소)		13	5	5		3	
		청결나라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자활 센터)	3	1	1		1	
		차사랑세차		2	2				
		한울건축		3	1	1		1	
		한마음농원		2	1			1	
		해피클린청소		3		3			
	시· 장 진 입 형	소계(3개소)		31	16	3		12	360,714
	한마음공방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자활 센터)	4	2	1		1	55,656	
	자활도우미		1				1	11,701	
	복지업무도우미	직접시행	26	14	2		10	293,357	
	사 회 적 일 자 리 형	소계(10개소)		124	79	22		23	1,290,696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자활 센터)	10	5	3		2	101,811
		그린재활용		10	6	2		2	102,502
		행복돌보미간병		20	15	2		3	201,430
		깔끄미이불빨래방		5	2	1		2	54,602
		자람터		15	13	2			164,445
		척척박사청소		25	15	5		5	265,156
		한울토탈하우징		5	2	1		2	53,917
	꽃드림화훼	8		5	1		2	88,780	

근로유지형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직접시행	6	4	2			58,000
	수목가꾸기사업	직접시행	20	12	3		5	200,053
	소계(8개소)		172	151	21			1,199,969
	문안도우미	직접시행	6	5	1			41,572
	동환경정비사업		30	25	5			211,160
	금정구건강도시센터		1	1				7,012
	옥외광고물정비		20	16	4			142,240
	공동자립장사업		14	14				97,568
	도서관도우미(금정)		3	2	1			20,936
	복지시설도우미		92	82	10			637,009
	학교시설지원		6	6				42,472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민간위탁 (해운대 복지관)	10	10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계	15	15				-
		취업알선	8	8				
		자활직업훈련	4	4				
		직업적응훈련	3	3				
		창업지원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다. 대상자 참여사업 종류(근로능력점수표에 의거 분류)

자활급여종류		기 준	근로능력 점 수
노동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70점 이상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로 취·창업 욕구가 높은자	70점 이하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 기술습득정도,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70점 이상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1~69점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	41~50점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 알코올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점수와 무관

3. 저소득 주민 보호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용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다.

(1)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 용자대상 : 보증금 5,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하는 저소득무주택자
 - 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용자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3,500만원 이내)
- 용자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해당주택 1년 이상 경과,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용자조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 이 율 : 연2%(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용자 제외자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가용 소유자, 신용불량거래자 등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 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2010년 용자추천실적 : 50건 726백만원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용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전세자금,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용자한도 : 2천만원 이하
- 용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 : 연3%(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신용대출(1,000만원이하) :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1명
 - 담보대출(2,000만원이하)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구서동 지점
- 2010년 용자실적 : 14건 135백만원

(3) 생업 자금

- 용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 용자용도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연 이 율 : 연 3%
- 용자기간 : 5년거치(이자만) 5년 균등분할상환(원리금)
- 대출금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 증 대출 : 2,000만원
 - 담 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 대출유형

-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 2010년 용자실적 : 2건 30백만원

나. 영구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철거세입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 요청 시 통보하고 있다.

〈 예비입주자 추천현황(2010년) 〉

사업주체	사업명	추천세대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192	
	전세임대	222	
	매입임대	151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	89	
	매입임대	168	

다.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 장학금 지급 실적 〉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급회수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년	30명	9,150	1회	15명	3,750	15명	5,400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직 자원 봉사자들로 금정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순회봉사단을 2010년에도 복지관, 교회 등의 장소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밀착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순회봉사단 구성 : 6개분야 약 72명(전문가 35명, 자원봉사자 37명)
 - ▷ 보건·의료분야,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시력검진, 생활상담, 무료급식
-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내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300명
- 최초구성일시 : 2000. 6. 11.
-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상반기(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교회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운영회수	2회	4회	2회	2회	1회	2회	2회	1회	2회
봉사인원	120명	251명	109명	114명	75명	193명	156명	61명	149명
수혜인원	1,200명	2,276명	1,311명	1,354명	637명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마.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2010. 12. 1. ~ 2011. 1. 31.
- 희망 2011 이웃돕기 모금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우리구 목표액	실 적 (모 금 액)					목표 대비 (%)	비고
		총 계	성 금			성 품		
			소 계	일 반	지 정			
계	229,370	355,706	300,664	235,052	65,612	55,042	155%	
구	229,370	167,385	153,035	123,645	29,390	14,350		
동		188,321	147,629	111,407	36,222	40,692		

※ 2010년 모금액 373,273천원

바. 긴급지원제도 실시

(1)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 대상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1,4784) / 보건복지콜센터(129)

(4) 지원기준

- 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00% 또는 150%이하
-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5)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1회),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6)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 단기지원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1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360~ 6인 1,333	300만원 이내	2인 321~ 6인 704	1인 445~ 6인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74(동절기10 ~ 3월) · 해 산비 · 장제비 : 50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 2010년 지원 실적 : 228건(생계30/의료186/주거1/교육7/연료2/장제1/전기료1) /
358,827천원

제4절 의 료 급 여

1. 의료급여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 ❖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주민 및 의사자, 의사자의 유족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의료급여현황 〉

(2010. 12. 31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6,370	9,890	4,877	6,217	1,493	3,673
서1동	465	771	329	431	136	340
서2동	355	585	248	317	107	268
서3동	449	736	313	423	136	313
금사동	358	588	267	352	91	236
부곡1동	605	1028	471	675	134	353
부곡2동	261	422	198	263	63	159
부곡3동	282	447	193	250	89	197
부곡4동	376	596	301	409	75	187
장전1동	204	343	136	188	68	155
장전2동	179	237	147	162	32	75
장전3동	289	443	222	283	67	160
남산동	766	1382	514	727	252	655
구서1동	215	395	138	203	77	192
구서2동	294	498	186	250	108	248
금성동	33	45	26	35	7	10
선두구동	126	167	106	123	20	44
청룡노포동	173	267	142	186	31	81
복지시설및행려자	940	940	940	940	0	0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건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1차 의료급여	의원	원내직접조제	원내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약국	직접조제	직접조제	900원	900원	좌동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처방조제			500원	1500원		
2차 의료급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원내직접조제	그 외의 경우	1,500원	총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0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원내직접조제	그 외의 경우	2,000원	총 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 진료비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시설입소 유도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거리나 임시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노숙인 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금정희망의집	금사동 50-1	60/56	5명	526-1033	

나. 부랑인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사랑의 선교회	부곡동 335-8	19/14	4명	518-8425	개인운영

다. 시설입소시(노숙인 쉼터) 지원사항

- 안정적인 숙소와 식사제공(1인당 2식, 토·공휴일은 중식포함)
- 일자리 정보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 쉼터에 머물면서 저축을 할 경우 은행금리에 연3% 높은 금리추가 지급
- 쉼터에 계신분들의 독립적인 주거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지원
- 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프로그램 참여
- 질병치료, 약품 제공 등 의료혜택

라.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시설

- 응급잠자리 제공
 - 평일이용시간 : 저녁 5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 (토·일요일·공휴일 : 저녁 7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 지원내용 : 잠자리, 긴급급식, 생필품(내의, 수건, 칫솔 등), 샤워·세탁 등
 - 문 의 : ☎ 463-1127 (부산진구 전포2동 667-3)

○ 무료진료소(사랑그루터기) 운영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1:00(화, 금요일)
- 진료내용 : 일반내과 등
- 문의 : ☎ 441-5662 (부산진구 전포2동 667-3)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임시잠자리, 긴급 급식, 생필품(칫솔, 면도기 등),
샤워·세탁·이발, 쉼터연계 및 고충상담 등
- 문의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동구 초량3동 1145-10 ☎463-7723)
부산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전포2동 667-3 ☎463-1127)